

퇴직신탁 표준계약서(구 하나은행)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후	비 고
<p>퇴직신탁 표준계약서(구 하나은행)</p> <p>제14조(신탁보수)</p> <p>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잔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. 다만, 단독운용하는 신탁의 신탁보수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기재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1. 채권형 : <u>연(0.6)%</u></p> <p>2. 주식안정형 : <u>연(0.6)%</u></p> <p>②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퇴직신탁 표준계약서(구 하나은행)</p> <p>제14조(신탁보수)</p> <p>① 이 신탁의 신탁보수는 신탁재산 순자산총액 평잔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. 다만, 단독운용하는 신탁의 신탁보수는 계약부속협정서에서 기재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.</p> <p>1. 채권형 : <u>연(0.3)%</u></p> <p>2. 주식안정형 : <u>연(0.3)%</u></p> <p>② <생략></p> <p>부칙 (2)</p> <p><u>(시행일) 이 약관은 2020. 7. 27. 부터 시행하기로 합니다.</u></p>	<p>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탁보수율을 인하하고자함.</p>